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실행방안 연구

2010. 12.

연 세 대 학 교
의 료 법 윤 리 학 연 구 원

<제목 차례>

이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록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I.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목적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u>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u>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1. 목적규정의 의의 및 규정방식 일반(一般)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당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취지를 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목적규정의 의의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규정이라는 점에 있다.

2. 유사 입법례

가. 보건의료기본법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u>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음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의료법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쟁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조의 목적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법제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목적규정의 의의와 규정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각각 “「A」 법률 또는 「A」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제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정방식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II.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법률(안)	시행규칙(안)
<p>제5조 (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① 법 제2조 제5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제1안]</p> <p>② 전항의 경우에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u>병원급 의료기관</u>으로 한다.</p> <p>[제2안]</p> <p>② 전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법 제5조 제3항의 모든 기관은 <u>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u>에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통합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기관은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권역별 평가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법률(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 의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5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기관은 의료기관 내에 자체적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일 것을 감안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는 현실적인 설치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는 제1안과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 위탁하여 통합 설치운영하고 권역별 평가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제2안의 규정을 두었다. 또한 동조의 입법 취지 및 현실 상황에 비추어 필요적 설치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임의적 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률(안)	시행규칙(안)
<p>제5조 (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① 법 제2조 제5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제1안]</p> <p>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p> <p>[제2안]</p> <p>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하며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p> <p>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p>

법률(안)	시행규칙(안)
	<p>자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인 3인 이상 2.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장 1인 이상 3. 보건직 공무원 1인 이상 ④ 평가인증기관에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위원에 평가인증기관 소속 공무원 1인도 포함하여야 한다.

3.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법률(안)	시행규칙(안)
<p>제5조 (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사고의 조사 및 연구 2.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 작성 3.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의 관리·감독 4. 기타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사항 <p>② 예방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③ 예방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방위원회의 결정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예방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어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방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의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I.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지부

법률(안)	시행령(안)
<p>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조정중재원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u>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2조 (조정중재원 지부) 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의료분쟁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권 2. 경기·강원권 3. 대전·충청권 4. 광주·제주·호남권 5. 대구·경북권 6. 부산·울산·경남권 <p>② 조정중재원은 전항에 따른 지부의 설치 시 의료분쟁의 다발성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업무의 경감 및 분장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권역을 통합하여 1개의 지부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권역에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법률(안) 제6조제3항에서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부 설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안) 제2조 제1항에서 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의료분쟁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6개 권역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안 제13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소관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6개 권역별 1개의 지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집중, 사건 접수의 다소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I. 조정중재원의 정관기재사항

법률(안)	시행령(안)
<p>제7조 (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3. 그 밖에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제5조 (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p> <p>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당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과 직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제4항의 이사의 직무대행 순서 5. 법 제29조에 의한 감정서 및 제34조의 조정결정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사항

법률안 제7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정관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중재원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정관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의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법 제11조 제4항의 이사의 직무대행의 순서는 사실상 정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I. 조정중재원의 업무

법률(안)	시행령(안)
-------	--------

법률(안)	시행령(안)
<p>제8조 (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제3조 (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 제5호에 의한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의 화해·조정 및 중재 권고 2.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감독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관리 및 감독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환수 5. 조정중재원의 산하 기관에 대한 통할 및 감독 6. 법 제38조에 의한 감정서 등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사항 7. 조정결정서와 감정서의 보관 및 관리 8. 조정결정 사건의 분석·통계 9. 감정비용과 연구기준개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조정중재원에 설치하고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두어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영 제19조에 의한 보상사업의 재원은 조정중재원이 자신의 일반회계와 분리된 계정에 산입하여 관리한다. 보상금의 환수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에 대한 환수의 구체적인 업무는 조정중재원이 담당한다. 조정중재원 산하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의료사고감정단(감정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 체계적 분장과 통할로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를 원만하게 처리한다.

IV. 이사회에 관한 규정

법률(안)	시행령(안)
<p>제13조 (이사회) ⑥ 이사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에 의한 조정중재원의 이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2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 학계를 대표하는 2인,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1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1인으로 구성한다.</p> <p>제5조 (조정중재원의 이사회)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개최한다.</p> <p>②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장인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p>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의 결정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조달 및 집행 결정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환수 집행결정 4.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결정 5. 해산 및 청산의 결정 6.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기록물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 7. 손해배상금 대불의 범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밖의 조정중재원의 업무집행에 관

법률(안)	시행령(안)
	<p>한 사항</p> <p>④ 전항 제4호에 의한 이사의 징계시 피징계인인 이사는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며, 피징계인인 임원과 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이사회는 반드시 1회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p>

법률(안)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의 정수는 6인 이하로 하며, 감사는 임원에 속하기는 하나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이른바 '자기심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다.

V. 조정중재원의 재원

1. 정부출연금의 지급

법률(안)	시행령(안)
<p>제15조 (재원)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6조 (정부출연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조정중재원의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한다.</p> <p>제7조 (출연금 신청) ① 조정중재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연도의 운영 ·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법률(안)	시행령(안)
	<p>추정대차대조표</p> <p>3. 다음 연도의 운영 · 사업계획과 이에 대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p> <p>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p> <p>제8조 (출연금결정의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정부출연금이 조정중재원의 운영경비인 경상비로 쓰인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해서 지급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규정한다. 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자가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항의 5월 31일까지의 기한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의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출연금 신청은 사업계획서, 전체 예산서와 동일하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부출연금의 사용

법률(안)	시행령(안)
<p>제15조 (재원)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제9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중재원장은 제1항의 출연금을</p>

법률(안)	시행령(안)
<p>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2.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의 인건비 3. 건물임차비 4. 자산취득비 5. 운영비 6. 감정 및 조정비용 7. 기타 그 밖의 간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자문비 등 <p>③ 조정중재원장은 당해 연도의 출연금의 사용실적과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출연금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조정중재원장은 정부출연금의 3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 조정중재원장은 제2항 제6호의 조정 및 감정비용을 독립된 계정에 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정중재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 판단,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618면 참조)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결산 및 감사에도 적절하다. 출연금의 사용목적은 한정하며 이에 대한 사용실적을 다음해에 검토한다.

VI. 조정중재원의 지도·감독

법률(안)	시행령(안)
<p>제16조 (감독)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6조 (감독) ① 조정중재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출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조정중재원은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고 또는 감사를 지시·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금의 부당하거나 낭비적 예산집행이 있는 경우 2. 출연금 지급의 효과가 아주 미비한 경우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과오납이 빈발한 경우

법률(안)	시행령(안)
	4. 기타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이므로 이로부터 1개월 후인 6월 말일까지가 감사시한으로 한다. 행정지도(지도, 조언, 권고)와 행정행위(요구, 명령)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한다.

Ⅶ.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안)	시행령(안)
<p>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임 조정위원을 두는 경우에도 그 수는 5인을 넘지 아니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사건을 관할 조정부에 배당한다.</p> <p>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12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p>

법률(안)	시행령(안)
	<p>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의 소관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통일적인 지침 마련 2. 의료분쟁조정 배상액 산정의 기준 마련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환수 집행 4. 조정사건의 관할 조정부 배당

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공개가 원칙이다. 4호는 제27조제4항과 관련된 업무이다.

VIII. 조정부의 업무

법률(안)	시행령(안)
<p>제23조 (조정부)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⑦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을 둘 수 있다.</p> <p>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3조 (조정부) ① 조정부로 선임된 조정위원은 10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p> <p>② 조정부는 조정사건에 대한 구두설명과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조정부는 법 제23조제5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사건의 감정부로의 감정의뢰 및 사건 이송 2. 과실 의료사고 여부의 결정 <p>④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학·의학·보건학 등에 학식이 있는 자로서 조정 및 중재판정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문기를 둘 수 있다.</p>

조정부는 의료분쟁사건의 사전심사 기능과 조정 및 중재판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근거를 규정한 다음 사전심사의 요건을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불가항력 사건의 보상액 산정 및 지급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소관이다. 제5항의 전문가는 추상적, 일반적 규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이었다.

IX. 감정부 및 추천위원회

1. 감정부의 조직

법률(안)	시행령(안)
제26조 (감정부)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 (감정부) ① 법 제26조제13항에 의한 감정부는 법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감정부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정부장은 상임 감정위원으로 하며 단장은 감정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상임 감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은 감정부의 구성을 상임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6조제7항은 감정위원의 정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의 체계상 감정부의 5인의 감정위원으로 하되 감정부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4인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감정부의 업무

법률(안)	시행령(안)
제26조 (감정부)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조 (감정부) ② 감정부는 법 제25조제3항의 감정단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의료분쟁사건에 대한 감정서 작성 2. 과실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여부의 규명

법률(안)	시행령(안)
	3. 과실 의료사고의 판정 및 조정부로 의 이송 4.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 건의 의료보상심의위원회로의 이송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 작 성기간의 연장 통지 6.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사건의 재감정

감정부의 업무는 감정단의 업무를 포함해서 오로지 의료사건에 대한 감정만을 담
당해야 감정부의 위상이 정립되고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

3. 감정부의 운영

법률(안)	시행령(안)
제26조 (감정부) ⑫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 사관을 둘 수 있다.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 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감정부) ③ 감정부는 재적 감 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사건이 접수된 경우 감정부는 당사자의 입회 하에 반드시 1회 이상 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지조사의 전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되 어야 한다. ⑤ 감정부에 법 제26조제12항에 열거 된 직군 외에 보건의료직종에 종사하 는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5항 “보건의료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같이 구체적 열거의 형태보다는 추상
적, 일반적 예시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6조 (감정부)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5조 (감정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제7조 (감정위원 추천위원회) ① 법 제26조제3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I. 조정의 신청

법률(안)	시행령(안)
<p>제27조(조정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p> <p>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p>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p>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p>	<p>제8조 (조정 신청)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조정부가 구술로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27조제3항과 제7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사건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절차로 종결된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 조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p>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p> <p>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p> <p>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건을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는 후에 소가 제기된 때 <p>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p>	

법률(안)	시행령(안)
<p>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p> <p>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p>⑪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p> <p>⑫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p>	

1. 필요적 각하사유의 규정

법률안 제27조제3항과 제7항이 조정신청에 대한 필요적 각하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법률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필요적 각하사유만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한다.

II. 감정서

법률(안)	시행령(안)
<p>제29조 (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감정서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17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감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정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② 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작성일자와 작성장소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 관련정도 6. 후유장애의 정도. 단 후유장애의 정도는 별표로 부기한다. 7. 각 감정위원의 감정소견 <p>③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감정부장 및 감정위원은 제2항제7호의 감정소견에 자신의 감정소견을 제6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율로 표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부로 송부하는 감정서는 감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되, 다수의 소견에 찬성하지 않는 감정위원의 다른 소견도 보충하여야 한다.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p> <p>⑤ 감정부는 작성·서명된 감정서의</p>

법률(안)	시행령(안)
	정본(正本)을 조정부에 송부한 후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감정서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

1. 감정서의 공정성 담보장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처럼 감정서에 다수견해와 더불어 반대견해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정서와 조정결정서의 보관연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시행규칙 제5조제5호)으로 한다.

Ⅲ. 조정결과의 통지

1. 피해구제절차의 고지

법률(안)	시행령(안)
<p>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 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18조 (피해구제절차의 고지)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이 없이 약품, 기기, 혈액 등의 물적 요소에 의한 경우에 조정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동시에 전항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p>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p> <p>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p> <p>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p> <p>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p>	

법 제36조제5항은 의료인의 과실 없이 오로지 물적 요소의 흠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제조자나 공급자 측에서 약품이나 혈액의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였고 의료인 측에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것을 발견해 낼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승인 하에 출시된 약품이 수년간 별 문제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뒤늦게 약품 자체의 결정적인 부작용 내지 결함이 발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에 이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와 동시에 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좀더 효율적이다.

2. 감정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법률(안)	시행규칙(안)
<p>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p>	<p>제9조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p>

법률(안)	시행규칙(안)
<p>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다)이 감정서 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중재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부분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p> <p>②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조정사건과 관련된 모든 감정서 등의 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사 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청구인은 조정중재원에 서면으로 감정서 등의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조정중재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조정중재원장 허가한 경우에도 1월 이내에 청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은 1회에 한하여 재청구를 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규칙(안)
	<p>이때 청구인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p> <p>제10조 (불복청구) 조정중재원장이 감정서 등의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11조 (대리청구) 청구인은 이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u></p>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 주체로 법률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중재원장으로 하는 것이 정보공개와 관리 및 이용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조정중재원에 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결과의 통지의 주체를 조정중재원장으로 한다. 재청구의 기회를 1회로 제한한다. 이로써 조정중재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를 참조하여 불복청구의 금지 및 대리청구를 허용한다.

3. 민사조정절차의 준용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제1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에 관	제12조 (이해관계인의 조정절차 참가)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12조)</u> 으로 정한다.	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정부장은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조정법 제16조, 제22조, 제31조를 준용한다.

4. 중재

법률(안)	시행령(안)
<p>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p> <p>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p>	<p>제20조 (중재) ① 법 제44조제3항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제1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 제19조 이하를 준용한다.</p>

중재절차에 대한 중재법의 준용 규정이다.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I. 의료배상공제조합

법률(안)	시행규칙(안)
<p>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 (의료배상공제조합) ① 공제조합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의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p> <p>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적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집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사고의 배상금 지급결정 2. 의료분쟁사고의 배상금의 적립방법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II.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법률(안)	시행규칙(안)
<p>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p>	<p>[제1안]</p> <p>제21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p>

법률(안)	시행규칙(안)
<p>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안] 제21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뇌성마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제1안에 따르면 의료분쟁 당사자가 먼저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한 후 이를 심사한 결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판명나면 조정중재원이 이를 보상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구조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설치근거를 규정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사전심사는 감정부에서 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결정, 보상범위 및 지급액 산정 등을 결정한다.

제2안은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의 대상을 ‘뇌성마비’로 한정한다. 일본의 경우는 보상대상을 중증 뇌성마비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시행초기에는

‘뇌성마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초기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보상대상을 확장해도 무방할 것이다.

1. 보상수급권자

법률(안)	시행령(안)
	<p>제22조 (보상수급권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아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2.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환자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

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상수급권자는 실제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는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실제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므로 보상수급권자의 범위가 보상금 청구자의 그것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2. 보상의 직접청구

법률(안)	시행령(안)
	<p>[신설안]</p> <p>제23조 (보상의 직접청구) 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에 태아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하 ‘보상금청구자’라 한다)은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경우 보상금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청소년전문 의 등에 의한 뇌성마비에 관련된 진단서

법률(안)	시행령(안)
	2. 진료기록 또는 조산기록 3. 검사자료의 사본 4. 출산증명서 ③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 사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감정부로 이송하여 해당여부를 심사하게 한다. 감정부는 1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안은 보상청구자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이유로 직접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에 대한 이원적 구조이다. 일본의 산과보상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의료분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과실보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법률의 전체 취지로 볼 때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둘 수 있다고 본다.

3. 보상청구의 시기

법률(안)	시행령(안)
	제24조 (보상청구의 시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신생아가 만 1세가 되는 날로부터 4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뇌성마비의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산후 6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긴장형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만 3세가 경과하여야 진단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만 1세부터 5세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만 1세 이전에는

중증 뇌성마비의 진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면 보상청구를 허용한다.

4. 보상범위 및 대상

법률(안)	시행령(안)
	<p>[제1안]</p> <p>제23조 (보상범위 및 대상)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감정부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천적인 사유로 분만시 뇌성마비가 된 경우 2. 병원감염 등으로 분만시 뇌성마비가 된 경우 <p>[제2안]</p> <p>제23조 (보상신생아의 대상) 보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임신분만에도 불구하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 33주 이상인 신생아만 해당된다.</p> <p>제24조 (개별심사에 의한 보상) ① 제22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태주수 28주 이상의 신생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를 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한다.</p> <p>② 전항의 경우 보상여부의 결정은 분만에 관련해 발병한 뇌성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p>③ 개별심사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산소 상황이 지속되어 탯줄 동맥 혈 중의 대사성 산성혈증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pH 7.1 미만) 2. 태아 심박수 모니터에 대해 특히 이상이 없었던 증례로 통상 징조가 되는 저산소 상황이 전치태반, 상위 태반 조기박리, 자궁과열, 임신중독 증, 탯줄 탈출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돌발성으로 지속하는 서맥, 자궁수축의 50% 이상에서 나타나는 지발일과성(遲發一過性) 서맥, 자궁수축의 50% 이상에서 나타나는 변동일과성(變動一過性) 서맥과 같은 태아심박수 패턴이 인정되어 심박수기선세변동의 소실이 인정되는 경우 <p>제25조 (보상제외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뇌증·다소뇌회·열뇌증·미즈나시뇌증 등 양측성의 광범위한 뇌기형, 염색체이상, 유전자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등과 같은 선천성 요인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의 신생아기 요인 3. 임신 또는 분만 중의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4. 지진·화산·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의 비상사태

법률(안)	시행령(안)
	② 신생아가 출산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안에서는 선천적 사유와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2안에서는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제외사유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생후 6개월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전에 사망한 신생아는 사실상 진단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보상사업의 재원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안]</p> <p>제24조 (보상사업의 재원)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부담하며 이를 조정중재원의 계정에 산입하여 운영하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p>② 전항에서 국가는 보상기금의 4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할을, 그리고 의료기관개설자</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는 3할을 부담한다. 보상기금 출연자는 물가변동에 비례하여 액수를 부담한다. 각 재원출연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액수는 <u>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u></p> <p>[제2안] 제24조 (보상사업의 재원)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부담하며 이를 조정중재원의 계정에 산입하여 운영하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p>② 전항에서 국가는 보상기금의 4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할을, 그리고 의료기관개설자는 3할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상기금 출연자는 물가변동에 비례하여 액수</p>	<p>[제1안] 제14조 (보상사업의 재원) ①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0.5할을 가산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전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부담액수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산부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구체적인 부담액수를 통지받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중재원에 납</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를 부담한다. 각 재원 출연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액수는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부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안: 조정중재원의 예산과 독립된 계정으로 보상기금을 운영한다. 구체적 부담 액수는 전체 보상재원을 설정한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정한다. 보상사업의 재원은 아래 표를 참조

[표 1] 산과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예산 추계

연간 출산 건수 ¹⁾ (단위:건)	무과실 보상 대상 뇌성마비 발생비율(가정) ²⁾ (단위:%)	평균 보상액(가정) ³⁾ (단위:만원)	총보상액 추계 (단위:백만원)	출산 1건당 소요 비용 (총보상액/총 출산건수) (단위:원)
440000	0.045	1,000	1,980	4,500
440000	0.045	3,000	5,940	13,500
440000	0.045	5,000	9,900	22,500
440000	0.045	10,000	19,800	45,000
440000	0.072	1,000	3,168	7,200
440000	0.072	3,000	9,504	21,600
440000	0.072	5,000	15,840	36,000
440000	0.072	10,000	31,680	72,000

- 1) 우리나라 연간 출산 건수는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 437,096건(약 44만건)
- 2) 일본산과의료보상기구에서는 총 출산 건수 대비 무과실 보상대상의 뇌성마비 발생비율은 0.045%~0.072%로 추계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3) 보상액은 각각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으로 가정하였음. 일본의 산과무과실보상제도의 경우 보상 대상 뇌성마비 1건당 보상액이 3000만엔임을 고려. 보상액은 환자의 피해정도,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표 2]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 현황

구분		전체(%)
지역	서울	605(26.2)
	광역시	683(29.5)
	그 외 지역	1,024(44.3)
종별	의원 및 전문병원	2,092(90.5)
	병원 및 종합병원	220(9.5)
합계		2,312(100.0)

* 출처: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최종보고서, 고려대학교/보건복지부, 2005, 34쪽

[표 3] 산부인과 부담금액(종별 분류 없이 2312개의 산부인과로 계산)

총 보상액 추계	산부인과 부담금액(전체 30%)	개별 산부인과 부담금액
₩ 5,900,000,000	₩ 1,770,000,000	₩ 765,571
₩ 9,500,000,000	₩ 2,850,000,000	₩ 1,232,689

[표 4] 산부인과 부담금액(종별 분류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배)

산부인과 부담금액	의원 및 전문병원 부담금액(전체)	개별 의원 및 전문병원 부담금액
₩ 1,770,000,000	₩ 1,528,835,671	₩ 730,801
₩ 2,850,000,000	₩ 2,461,684,558	₩ 1,176,713

산부인과 부담금액	병원 및 종합병원 부담금액(전체)	개별 병원 및 종합병원 부담금액(의원급의 1.5배)
₩ 1,770,000,000	₩ 241,164,329	₩ 1,096,201
₩ 2,850,000,000	₩ 388,315,441	₩ 1,765,070

6. 보상액

법률(안)	시행령(안)
	제25조 (보상액) 보상액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환자 등의 생계유지상황과 및 장애의 정도를 참작하여 보상수급권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한다.

법률(안)	시행령(안)

보상액의 상한은 가급적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질사항유보설)

7.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법률(안)	시행령(안)
	<p>제2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와 전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각 1인,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산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각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중재원장이 임명한다.</p>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는 조정중재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8.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

법률(안)	시행령(안)
	<p>제2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p>

법률(안)	시행령(안)
	<p>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결정 2.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금의 지급 여부 3.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 및 보상대상의 확정 4.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액 산정 5. 이 시행령 제30항에 의한 보상금의 환수 결정 6. 이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보상청구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및 보상금 환수로 한정한다.

9. 보상금의 지급절차

법률(안)	시행령(안)
	<p>제28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이유로 보상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조정중재원은 지체없이 보상수급권자에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수급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조정중재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중재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이유로 보상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조정중재원은 지체없이 보상수급권자에게 불가항</p>

법률(안)	시행령(안)
	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1,000만원 이내의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0. 보상금의 환수

법률(안)	시행령(안)
	<p>제30조 (보상금의 환수) ① 조정중재원장은 이 법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기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조정중재원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반환의무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p>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6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참조

11. 손해배상과의 관계

법률(안)	시행령(안)
	<p>제31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조정중재원이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상수급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과실 의료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조정중재원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보상수급권자가 당해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손해배상의 경우는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무과실로 인한 보상금 지급과 충돌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은 확인적 성격을 지닌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p>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p>	<p>제32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① (1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위험도 관련 금액의 2분의 1을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p> <p>(2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1000분의 2 2.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마목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1000분의 5 	<p>제14조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①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조정중재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p>제15조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심사기준)</p> <p>①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 2. 피해자가 사위 기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는지 여부 3. 손해배상금 대불의 피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보건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p>	<p>3.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마목의 종합병원은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1000분의 7</p> <p>② 조정중재원장은 제1항의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3조 (손해배상금 대불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법 제4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제외된다.</p> <p>제35조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① 피해자</p>	<p>여부</p> <p>4. 손해배상금 대불의 피청구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그밖의 사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 또는 불이행하는지 여부</p> <p>② 그 밖에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심사의 세부적 기준정립 업무를 조정중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p> <p>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p> <p>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p>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중재원장에게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법 제4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조정중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해배상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해태하는지 여부 2. 손해배상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3. 단순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지체 여부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6조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절차) 피해자가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화해조서, 지급명령정본,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본 1부 <p>제37조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①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자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불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p> <p>제38조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한 때에는 그 구상금액을 시행규칙 제14조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2. 손해배상의무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조정중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중재원장은 법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황이 불가능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의의

이 법에 의한 조정 등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사정으로 채권자인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개설자 등을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제도의 의의가 있다.

2. 비용 부담주체 및 부담절차

법률안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안 제47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안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1안과 제2안이 마련되어 있다. 제1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중 일부(위험도 관련 금액)를 직접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2안은 위험도 관련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병원의 종류에 따라 일괄하여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안 모두 법 시행 후 1회의 절차를 통하여 약 1,000억원의 재원을 형성하고, 향후 지급으로 인한 부족분은 구상권 행사로 해결한다. 제1안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비용부담에 있어 공평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보건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비용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보건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담액을 산출하므로 집행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2안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대불의 범위

시행령안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대불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피해자인 환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불의 범위에는 손해배상금만을 포함하며 기타 제반비용은 제외하도록 한다.

4.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해태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단순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지체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순한 지급의 지체는 조정중재원이 채무자인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을 종용하여 지급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손해

배상금 대불청구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및 결손처분

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에서 직접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제6장 보칙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50조 (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9조 (조정비용) ①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조정중재원에 납부한다. 수수료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금액의 1000분의 1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p> <p>② 법 제50조 제2항의 감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조정과 중재의 결정에 비례하여 감정비용을 부담한다.</p> <p>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 제3항의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1. 조정비용

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조정 또는 중재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며 민사조정법상의 기준인 신청금액의 1,000분의 1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6조 제3항의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p>	<p>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1.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로 따로 정하고, 가중·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2. 시행령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이상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0	130	180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50	100	150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	150	200
라.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0	150	200
마.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0	200	250

부록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표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 	<p>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p> <p>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한국회귀의약품센터 이사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p> <p>제3조 (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p>		<p>[제1안]</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5조 (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u>② 전항의 경우에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u></p> <p>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u>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u></p> <p>[제2안]</p> <p>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① 법 제2조 제5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료기관 내에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법 제 5조 제3항의 모든 기관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가칭)에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기관은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권역별 평가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위촉하며 <u>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u></p> <p>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인 3인 이상 2.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장 1인 이상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3. 보건직 공무원 1인 이상</p> <p>④ 평가인증기관에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위원에 평가인증기관 소속 공무원 1인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사고의 조사 및 연구 2.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 작성 3.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의 관리·감독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사항 <p>② 예방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③ 예방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방위원회의 결정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구속하지</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p> <p>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조정중재원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u>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2조 (조정중재원 지부) 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의료분쟁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권 2. 경기 · 강원권 3. 대전 · 충청권 4. 광주 · 제주 · 호남권 5. 대구 · 경북권 6. 부산 · 울산 · 경남권 <p>② 조정중재원은 전항에 따른 지부의 설치 시 의료분쟁의 다발성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업무의 경감 및 분장 등을 고려하여</p>	<p>아니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7조 (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항 	<p>몇 개의 권역을 통합하여 1개의 지부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권역에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5조 (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당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과 직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제4항의 이사의 직무대행 순서 5. 법 제29조에 의한 감정서 및 제34조의 조정결정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사항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p> <p>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p> <p>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12.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13. 그 밖에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8조 (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업무 	<p>제3조 (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 제5호에 의한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의 화해·조정 및 중재 권고 2.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감독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관리 및 감독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환수 5. 조정중재원의 산하 기관에 대한 통할 및 감독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 (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법 제38조에 의한 감정서 등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사항 7. 조정결정서와 감정서의 보관 및 관리 8. 조정결정 사건의 분석·통계 9. 감정비용과 연구기준개발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p> <p>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④ 원장·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 그 밖의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p> <p>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제13조 (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원장·위원장·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p>	<p>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에 의한 조정중재원의 이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2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 학계를 대표하는 2인,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1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1인으</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장이 된다.</p> <p>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이사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로 구성한다.</p> <p>※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의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p> <p>제5조 (조정중재원의 이사회)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개최한다.</p> <p>②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인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p>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의 결정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조달 및 집행 결정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환수 집행 결정 4.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결정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4조 (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제15조 (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p>	<p>5. 해산 및 청산의 결정</p> <p>6.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기록물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p> <p>7. 손해배상금 대불의 범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p> <p>8. 그밖의 조정중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p> <p>④ 전항 제4호에 의한 이사의 징계시 피징계인인 이사는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며, 피징계인인 임원과 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이사회는 반드시 1회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p> <p>제6조 (정부출연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개</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으로 충당한다.</p> <p>1. 정부출연금</p> <p>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p> <p>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시 30일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조정중재원의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한다.</p> <p>제7조 (출연금 신청) ① <u>조정중재원장은</u>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다음 연도의 운영 · 사업계획서</p> <p>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p> <p>3. 다음 연도의 운영 · 사업계획과 이에 대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p> <p>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양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p> <p>제8조 (출연금결정의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중재원장은 제1항의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2.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의 인건비 3. 건물임차비 4. 자산취득비 5. 운영비 6. 감정 및 조정비용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7. 기타 그 밖의 간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자문비 등</p> <p>③ 조정중재원장은 당해 연도의 출연금의 사용실적과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출연금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조정중재원장은 정부출연금의 3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 조정중재원장은 제2항 제6호의 조정 및 감정비용을 독립된 계정에 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정중</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6조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p>	<p>재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 (감독) ① <u>조정중재원장</u>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출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u>조정중재원장</u>은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7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 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 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 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 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8조 (「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고 또는 감사를 지시·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금의 부당하거나 낭비적 예산집 행이 있는 경우 2. 출연금 지급의 효과가 아주 미비한 경우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과오납이 빈발한 경우 4. 기타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p> <p>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제1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임 조정위원을 두는 경우에도 그 수는 5인을 넘지 아니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p>	<p>쳐 조정사건을 관할 조정부에 배당한다.</p> <p>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12조 (조정위원회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의 소관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통일적인 지침 마련</p> <p>2. 의료분쟁조정 배상액 산정의 기준 마련</p> <p>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환수 집행</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22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p> <p>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4. 조정사건의 관할 조정부 배당</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p> <p>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제23조 (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p> <p>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인,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안]</p> <p>제13조 (조정부) ① 조정부로 선임된 조정위원은 10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p> <p>② 조정부는 조정사건에 대한 구두설명과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조정부는 법 제23조제5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사건에 관한 판단</p> <p>2. 조정사건의 감정부로의 감정의뢰 및 사건 이송</p> <p>3. 과실 의료사고 여부의 결정</p> <p>④ 전항 제1호의 경우 조정부는 신청사건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명백하게 판</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p> <p>⑦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p> <p>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p>	<p><u>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중재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정중재원장은 당해 사건을 각하한다.</u></p> <p>⑤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학·의학·보건학 등에 학식이 있는 자로서 조정 및 중재판정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문가를 둘 수 있다.</p> <p>[제2안]</p> <p>제1조 (사무국의 업무관장사항) 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사무국은 의료사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결과를 조정중재원장에게 보고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신청사건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이를 각하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p> <p>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p> <p>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23조제7항에</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제 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게 이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의료사고감정단</p> <p>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p> <p>제26조 (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p> <p>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인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또는 	<p>제14조 (감정부) ① 법 제26조제13항에 의한 감정부는 법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감정부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정부장은 상임 감정위원으로 하며 단장은 감정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상임 감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p> <p>② 감정부는 법 제25조제3항의 감정단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사건에 대한 감정서 작성 2. 과실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여부의 규명 3. 과실 의료사고의 판정 및 조정부로의 이송 4.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의 의료보상심의위원회로의 이송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기간 	<p>제7조 (감정위원 추천위원회) ① 법 제26조제3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p> <p>4.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인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인으로 한다.</p> <p>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p> <p>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p>	<p>의 연장 통지</p> <p>6.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사건의 재감정</p> <p>③ 감정부는 재적 감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조정사건이 접수된 경우 감정부는 당사자의 입회 하에 반드시 1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지조사의 전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되어야 한다.</p> <p>⑤ 감정부에 법 제26조제12항에 열거된 직군 외에 보건의료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p> <p>제15조 (감정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7조)</u>으로 정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추천한 사람</p> <p>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만, 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p> <p>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의 의사전문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 3인</p> <p>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 1인</p> <p>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1인</p> <p>⑧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p> <p>⑨ 감정부에 1인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p> <p>⑩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p> <p>⑪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p> <p>⑫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p> <p>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 정</p> <p>제27조(조정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p>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p>		<p>제8조 (조정 신청)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조정부가 구술로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27조제3항과 제7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u>조정 신청을 각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사건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절차로 종결된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 조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p> <p>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p> <p>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p> <p>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p> <p>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p> <p>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p> <p>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p> <p>3. 조정신청이 있는 후에 소가 제기된 때</p> <p>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p> <p>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부터 10년</p> <p>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p> <p>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9조 (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감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정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② 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작성일자과 작성장소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제1항의 감정서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 관련정도 6. 후유장애의 정도. 단 후유장애의 정도는 별표로 부기한다. 7. 각 감정위원의 감정소견</p> <p>③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감정부장 및 감정위원은 제2항제7호의 감정소견에 자신의 감정소견을 제6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율로 표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부로 송부하는 감정서는 감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되, 다수의 소견에 찬성하지 않는 감정위원의 다른 소견도 보충하여야 한다.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p> <p>⑤ 감정부는 작성·서명된 감정서의 정보</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0조 (의견진술 등) 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p>	<p>(正本)을 조정부에 송부한 후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감정서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 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제31조 (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p> <p>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제33조 (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조정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한다.</p> <p>제34조 (조정결정서)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행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p>② 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35조 (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p>	<p>제18조 (피해구제절차의 고지) ①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이 없이 약품, 기기, 혈액 등의 물적 요소에 의한 경우에 조정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통지하면서 동시에 전항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p>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제9조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감정서 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중재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부분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p> <p>②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조정사건과 관련된 모든 감정서 등의 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사</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청구인은 조정중재원에 서면으로 감정서 등의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다. 조정중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조정중재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u>조정중재원장 허가한 경우에도</u> 1월 이내에 청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은 <u>1회에 한하여</u> 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은 그 사유서</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p>	<p>제1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12조)</u>으로 정한다.</p>	<p>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p> <p>제10조 (불복청구) 조정중재원장이 감정서 등의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11조 (대리청구) 청구인은 이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u></p> <p>제12조 (이해관계인의 조정절차 참가)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p> <p>② 조정부장은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p> <p>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p> <p>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p>		<p>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때</p> <p>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중 재</p> <p>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p> <p>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p> <p>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p>	<p>제20조 (중재) ① 법 제44조제3항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제1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 제19조 이하를 준용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한다.</p> <p>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p> <p>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제13조 (의료배상공제조합) ① 공제조합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의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p> <p>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적 과 반수의 찬성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집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분쟁사고의 배상금 지급결정 2. 의료분쟁사고의 배상금의 적립방법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p>	<p>[제1안]</p> <p>제21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관한 업무등을 관장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안]</p> <p>제21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뇌성마비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2조 (보상수급권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아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2.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환자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 <p>[신설안]</p> <p>제23조 (보상의 직접청구) 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에 태아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하 ‘보상금청구자’라 한다)은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다.</p> <p>② 전항의 경우 보상금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아청소년전문의 등에 의한 뇌성마비에 관련된 진단서 2. 진료기록 또는 조산기록 3. 검사자료의 사본 4. 출산증명서 <p>③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감정부로 이송하여 해당여부를 심사하게 한다. 감정부는 1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상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p> <p>④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 (보상청구의 시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신생아가 만 1세가 되는 날로부터 4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뇌성마비의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산후 6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저긴장형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만 3세가 경과하여야 진단을 할 수 있다.</p> <p>[제1안] 제23조 (보상범위 및 대상)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감정부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천적인 사유로 분만시 뇌성마비가 된 경우 2. 병원감염 등으로 분만시 뇌성마비가 된 경우 <p>[제2안] 제23조 (보상신생아의 대상) 보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임신분만에도 불구하고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 33</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주 이상인 신생아만 해당된다.</p> <p>제24조 (개별심사에 의한 보상) ① 제22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태주수 28주 이상의 신생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를 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한다.</p> <p>② 전항의 경우 보상여부의 결정은 분만에 관련해 발병한 뇌성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p> <p>③ 개별심사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산소 상황이 지속되어 탯줄 동맥혈 중의 대사성 산성혈증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pH 7.1 미만) 2. 태아 심박수 모니터에 대해 특히 이상이 없었던 증례로 통상 징조가 되는 저산소 상황이 전치태반, 상위태반 조기박리, 자궁 파열, 임신중독증, 탯줄 탈출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돌발성으로 지속하는 서맥, 자궁수축의 50% 이상에서 나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타나는 지발일과성(遲發一過性) 서맥, 자궁 수축의 50% 이상에서 나타나는 변동일과성(變動一過性) 서맥과 같은 태아심박수 패턴이 인정되어 심박수기선세변동의 소실이 인정되는 경우</p> <p>제25조 (보상제외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뇌증·다소뇌회·열뇌증·미즈나시뇌증 등 양측성의 광범위한 뇌기형, 염색체이상, 유전자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등과 같은 선천성 요인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의 신생아기 요인 3. 임신 또는 분만 중의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4. 지진·화산·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의 비상사태 <p>② 신생아가 출산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안]</p> <p>제24조 (보상사업의 재원) 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부담하며 이를 조정중재원의 계정에 산입하여 운영하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p>② 전항에서 국가는 보상기금의 4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할을,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3할을 부담한다. 보상기금 출연자는 물가변동에 비례하여 액수를 부담한다. 각 재원출연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액수는 <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p> <p>[제2안]</p> <p>제24조 (보상사업의 재원) ① 의료사고 보상</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부담하며 이를 조정중재원의 계정에 산입하여 운영하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p>② 전항에서 국가는 보상기금의 4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할을,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3할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상기금 출연자는 물가변동에 비례하여 액수를 부담한다. 각 재원출연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액수는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25조 (보상액) 보상액은 3천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환자 등의 생계유지상황과 및 장애의 정도를 참작하여 보상수급권자에게 차등하여 지급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와 전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조정중재원장 소속 하에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각 1인,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산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각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중재원장이 임명한다.</p> <p>제2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결정 2.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금의 지급 여부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3.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 및 보상 대상의 확정</p> <p>4.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액 산정</p> <p>5. 이 시행령 제30항에 의한 보상금의 환수 결정</p> <p>6. 이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보상청구에 관한 사항</p> <p>제28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이유로 보상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조정중재원은 지체없이 <u>보상수급권자에게</u>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u>보상수급권자</u>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조정중재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중재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안]</p> <p>제14조 (보상사업의 재원) ①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중</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제1항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이유로 보상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 조정중재원은 지체없이 보상수급권자에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1,000만원 이내의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30조 (보상금의 환수) ① 조정중재원장은 이 법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기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조정중재원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p>	<p>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0.5할을 가산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전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부담액수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산부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구체적인 부담액수를 통지받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중재원에 납부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반환의무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p> <p>제31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조정중재원이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상수급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과실 의료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조정중재원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보상수급권자가 당해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5장 손해배상금 대拂(代拂) 제47조 (손해배상금 대拂)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拂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p>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拂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p>	<p>제32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대拂금) ① (1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위험도 관련 금액의 2분의 1을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p> <p>(2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1000분의 2 2.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마목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1000분의 5 3.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마목의 종합병원은 전체 요양급 	<p>제14조 (손해배상금 대拂계정) ①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拂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손해배상금 대拂계정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조정중재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p>제15조 (손해배상금 대拂청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대拂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拂청구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 2. 피해자가 사위 기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拂을 청구하는지 여부 3. 손해배상금 대拂의 피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p> <p>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p>	<p>여 비용의 1000분의 7</p> <p>② 조정중재원장은 제1항의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별도로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3조 (손해배상금 대불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법 제4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제외된다.</p> <p>제35조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① 피해자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p>	<p>4. 손해배상금 대불의 피청구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 그밖의 사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 또는 불이행하는지 여부</p> <p>② 그 밖에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심사의 세부적 기준정립 업무를 조정중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p> <p>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p>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중재원장에게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법 제4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조정중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해배상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해태하는지 여부 2. 손해배상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3. 단순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지체 여부 <p>제36조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절차) 피해자가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불을 받고자 하</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화해조서, 지급 명령정본,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본 1부 <p>제37조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①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자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장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불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p> <p>제38조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한 때에는 그 구상금액을 시행규칙 제14조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해배상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손해배상의무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조정중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③ 조정중재원장은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48조 (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 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49조 (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 (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p>	<p>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9조 (감정비용) ①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조정중재원에 납부한다. 수수료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금액의 1000분의 1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p> <p>② 법 제50조 제2항의 감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p> <p>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p> <p>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p>	<p>나 중재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조정과 중재의 결정에 비례하여 감정비용을 부담한다.</p> <p>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 칙</p> <p>제53조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 	<p>부 장관은 법 제6조 제3항의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p> <p>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5.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준비위원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로 인한</p>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